



2012

생활세금 시리즈

**Happy Tax!
Happy Together!**

우리 생활과 밀접한 60가지
다양한 세금상식을 모았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www.nts.go.kr

국세청



2012

생활세금 시리즈

**Happy Tax!
Happy Together!**

우리 생활과 밀접한 60가지
다양한 세금상식을 모았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머리말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고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선진 일류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목표로 공정세정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에는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국세청’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방지하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숨긴재산 무한 추적팀」을 운영하여 고의·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세정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최신 세무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기에 제공하고, 모든 국세관련 상담을 위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통 재래시장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나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매년 ‘생활세금시리즈’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사업자와 세금신고’, ‘봉급생활자와 세금’, ‘주택과 세금’, ‘부동산과 세금’, ‘알기쉬운 세금정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탈세제보와 포상금제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금 기초상식을 한데 모아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4월

국세청장 이 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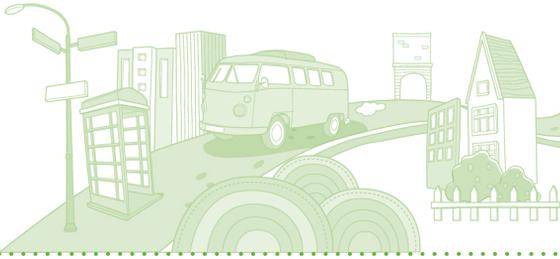
Contents

제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01 기초세금상식	10
02 사업자등록안내	12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14
04 사업자유형	16
05 확정일자신청안내	18
06 민원서류 신청 시구비서류	20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22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안내	24

제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0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6
02 소득세 신고·납부	28
03 기준경비율제도	30
04 원천징수 납부	32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34
0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36
07 폐업신고	38
※ 이전 세무서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40



www.tts.go.kr

국세청



제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0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42
02	의료비 공제제도	46
03	교육비 공제제도	48
0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50
05	퇴직금과 세금	52
06	연금과 세금	54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56
	※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58

제4장 주택과 세금

01	주택의 취득과 세금	60
02	주택의 양도와 세금	62
03	주택의 임대와 세금	64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66
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68
06	1세대 다주택 종과세 한시적 완화	70
07	종합부동산세 안내	72
	※ 자료상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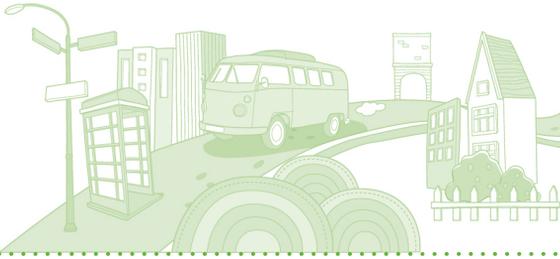
Contents

제5장 부동산과 세금

0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78
02 양도소득세 계산요령	80
03 자경농지와 세금	82
04 재산의 상속과 세금	84
05 재산의 증여와 세금	87
0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89
0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90
08 기업의 사전상속제도	92

제6장 알기쉬운 세금정보

01 국세청고객만족센터	96
02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98
0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00
04 징수유예 · 납기연장안내	102
05 홈택스 이용안내	104
06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안내	106
0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107
08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08



www.tts.go.kr

국세청



제7장 납세자권익보호제도

01 납세자권리현장	110
02 납세자권익준중위원회	112
03 납세자보호담당관	113
0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114
05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116
06 세금포인트 제도	118
07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120
08 근로장려세제	122

제8장 탈세제보와 포상금제도

01 탈세제보 안내	126
0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127
0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28
04 신용카드 결제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129
0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130
06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131
07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32
08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133

2012
생활세금
시리즈



1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01 기초세금상식	10
02 사업자등록안내	12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14
04 사업자유형	16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18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20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22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안내	24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2011. 7. 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용단(200만원과 m²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소득세

-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 ~ 4. 25. 7. 1. ~ 7. 25. 10. 1. ~ 10. 25. 1. 1. ~ 1. 25.	1. 1. ~ 3. 31. 의 사업실적 4. 1. ~ 6. 30. 의 사업실적 7. 1. ~ 9. 30. 의 사업실적 10. 1. ~ 12. 31. 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기 확정 2기 확정	7. 1. ~ 7. 25. 1. 1. ~ 1. 25.	1. 1. ~ 6. 30. 의 사업실적 7. 1. ~ 12. 31. 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 ~ 5. 31.	1. 1. ~ 12. 31. 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 1. ~ 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익월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시설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보석·귀금속상			3개월의 판매금액 (2백만원 초과분)
	가구제조업 등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기준가격 초과분)
카지노 영업장	익년 3월말일까지		1년간 총 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 2. 10.		1. 1. ~ 12. 31. (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1. 10.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일이 속하는 다음해 3월말일까지 영업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 등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참조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제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 ~ 38% (5단계)	10 ~ 22% (3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 100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함)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폐업신고

1. 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폐업신고확인서(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민원증명 신청

◆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관이 발행한 자격증 등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 대리신청 (가족 포함)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증명의 종류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 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 구비서류 관련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을 충당합니다.
-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는 김○○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총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는 한○○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을 총당함)
-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를 절대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
서비스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과세 유형·휴폐업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 유형·휴폐업)
이용대상자	홈택스 가입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요	불필요
자료제공 시기	매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1일간 시차 발생)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시차 발생)

2

사업자와 세금신고

0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6
02 소득세 신고·납부	28
03 기준경비율제도	30
04 원천징수 납부	32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34
0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36
07 폐업신고	38
*이전 세무서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40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 1. 1.~1. 25.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times 업종별 부가가치율 \times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 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2012년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증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음식업, 숙박업	30%
운수 및 통신업	40%

◎ 소득세 신고 · 납부

-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 30.까지 신고·납부 가능
-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장부의 비치·기장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를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금액)

$$\text{①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text{②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를 적용 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기준경비율제도란?

-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백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 적용 예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2년 5월(2011년 귀속분)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즉,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 2011. 1. 1.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② 중 적은 금액)

$$\textcircled{1} \text{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textcircled{2} \text{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201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 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 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 1. ~ 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1. ~ 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 다만,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나, 4,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통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통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 ◆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유통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석유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유통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 과세유통장소 : 유통음식요금
- ◆ 과세장소 : 입장인원
- ◆ 보석·귀금속상 :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10%
 - 2012. 3. 15. 이후 반출차량 8%, 2013년 7%, 2014년 6%, 2015년 이후 5%
- ◆ 배기량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전기승용차는 5% (2014년까지 2백만원 한도로 감면)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함)
- ◆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승용차 차량

◎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경마장은 500 원
- ◆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 원
- ◆ 골프장은 12,000 원
- ◆ 경륜장 · 경정장은 200 원
- ◆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3,500 원
- ◆ 기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0,000 원
 -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00 \text{ 원} \div 1.1 = 90,909,090 \text{ 원}$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 \text{ 원} \div 1.13 = 80,450,522 \text{ 원}$
- ◆ 개 별 소 비 세 : $80,450,522 \text{ 원} \times 10\% = 8,045,052 \text{ 원}$
- ◆ 교 육 세 : $8,045,052 \text{ 원} \times 30\% = 2,413,515 \text{ 원}$
- ◆ 부 가 가 치 세 : $90,909,090 \text{ 원} \times 10\% = 9,090,900 \text{ 원}$
 -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개별소비세의 30%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젠 세무서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정보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 ◆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 최근 국세 소식은 「국세청 뉴스레터」 E-mail 서비스로

- ◆ 국세뉴스, 세금상식 등 최신의 국세정보를 매주 E-mail로 서비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신청

◎ 국세신고·납부·증명발급은 「홈택스(www.hometax.go.kr)」로

- ◆ 전자신고 : 세금신고서를 PC로 작성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
- ◆ 세금납부 :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 ◆ 증명발급 : 민원증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PC에서 직접 출력
※ 홈택스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접속 가능

◎ 국세관련 문의·상담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세에 대하여

- ◆ 전화(국번없이 126)
- ◆ 인터넷(<http://call.nts.go.kr>)
- ◆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등의 방법으로 문의·상담

3

보급생활자와 세금

0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42
02 의료비 공제제도	46
03 교육비 공제제도	48
0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50
05 퇴직금과 세금	52
06 연금과 세금	54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56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58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세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일용근로자	1일당 10만원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3억원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6세 이하 영유아, 위탁아동) • 부녀자공제 : 1인당 50만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만) • 출산·입양공제 :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일 때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초과할 때 : 1인당 200만원 • 자녀 3인 300만원, 4인 500만원, 5인 7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

◆ 특별공제

구 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보 험 료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기타 보장성보험료 : 연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100만원 한도
의 료 비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 • 한도(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는 한도액이 없음)
교 육 비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주 택 자 금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공제대상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과 임차주택의 월세금액의 40% 상당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500만원 한도(교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대출인 경우 1,500만원 한도)
기 부 금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 기타 소득공제

구 분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2. 31. 이전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2001. 1. 1. 이후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연 400만원 한도)
신 용 카 드 사 용 소 득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300만원 한도) 다만,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그 초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300만원 한도로 하되,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따른 전통시장 구역안의 상점 등을 말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p>〈종전 : 총 급여 4,800만원인 경우〉</p> <p>총 사용 금액 2,400만원</p> <p>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1,200만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 (공제율 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 (공제율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 사용분 (2,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체크카드 사용분 (400만원)</td> </tr> </table> <p>• 공제금액 : 250만원 (문턱초과 1,200만원 × 신용카드 사용비율 2,000/2,400 × 20%) + (문턱초과 1,200만원 × 체크카드 사용비율 400/2,400 × 25%) = 250만원</p>	1,000만원 (공제율 20%)	200만원 (공제율 25%)	1,000만원	2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분 (400만원)	<p>〈개정 : 신용카드분 400만원을 전통시장에 사용〉</p> <p>총 사용 금액 2,400만원</p> <p>공제문턱 (1,200만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 (공제율 30%)</td> <td rowspan="3" style="font-size: 2em;">}</td> <td rowspan="3">전통시장 사용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 (공제율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 (공제율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0만원</td> <td rowspan="2" style="font-size: 2em;">}</td> <td>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 장사용분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400만원)</td> <td>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 장사용분 제외)</td> </tr> </table> <p>• 공제금액 : 320만원 (신용카드 400만원 × 20%) + (체크카드 400만원 × 30%) + (전통시장 400만원 × 30%) = 320만원 ※ 공제한도(400만원) = 300만원(현행) + 추가공제(100만원)</p>	400만원 (공제율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공제율 30%)	400만원 (공제율 20%)	1,200만원	}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 장사용분 제외)	(2,4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 장사용분 제외)
1,000만원 (공제율 20%)	200만원 (공제율 25%)																
1,000만원	2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분 (400만원)																
400만원 (공제율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공제율 30%)																	
400만원 (공제율 20%)																	
1,200만원	}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 장사용분 제외)															
(2,4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 장사용분 제외)															

◎ 의료비 공제

- ◆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text{총 급여액} = \text{연간 급여액} - \text{비과세 소득}$$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text{의료비총액} - (\text{총 급여액} \times 3\%) = \text{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text{① 한도초과금액} = \text{의료비총액} - (\text{총 급여액} \times 3\%) - 700\text{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text{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text{만원} = \text{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 2010. 1. 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국내 교육비 공제

-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초·중·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고등학생)
 - 소득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액

본 인	직 계 비 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 계산사례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계산

$$\frac{\text{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 250\text{만원}}{\text{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 200\text{만원} - 100\text{만원}} = 100\text{만원}$$

합계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저축과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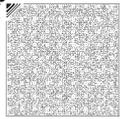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축명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
생계형저축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2014.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장기주택 마련저축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85㎡ 및 3억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이하 7년 이상 저축 계약	2012.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원 이하	2012.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a 이하 어선 소유)	연간 144만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14.12.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녹색저축	거주자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	1인당 2,000만원 이하 녹색투자신탁· 채권은 3천만원 이하	2012.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 :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 : 20~60세
- 적용기한 : 2014. 12. 31. 까지 가입분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저축명	공제금액
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연간 4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 세대주 등)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해서만 2012. 12. 31.까지 소득공제

◎ 보험과 세금

◆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보험차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계약 기준일	계약내용	제외사유
2003. 12. 31.이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기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아닐 것
2004. 1. 1.이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 · 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text{지급받은 보험금} \times (\text{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 \text{총 불입한 보험료})$$

- 증여재산 :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text{지급받은 보험금} \times (\text{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 / \text{총 불입한 보험료})$$

◎ 증권과 세금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 ·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 :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 증권거래 :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상장주식 0.3%, 코스닥등록 주식 0.4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퇴직소득과 세금

- ◆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 규정·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비 과 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해보상금, 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보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근로소득세 과세

퇴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 등

◎ 퇴직소득세의 계산

-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left(\text{과세표준} \times \frac{1}{\text{근속연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text{납부세액}$$



◎ 퇴직급여액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 퇴직급여액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3억원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 계산사례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1\text{억원}] - [1\text{억원} \times 40\%] - [4\text{백만원} + 80\text{만원} \times 10\text{년}] = [4,800\text{만원}]$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 납부할 세액의 계산
 $[4,800\text{만원} \times 1/20] \times [6\%] \times [20\text{년}] = [288\text{만원}]$
연평균과세표준 해당세율 근속연수 산출세액

◎ 연금소득 과세

◆ 종전에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연금 저축은 2001. 1. 1.부터, 공적연금은 2002. 1. 1.부터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공적연금의 경우)

- 기존불입분(2001. 12. 31. 이전 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과세 제외
- 2002. 1. 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과세
- 2002. 1. 1. 현재 불입자 → 2001. 12. 31. 이전 불입분은 과세 제외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받는 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납입계약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또는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연금소득금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율 (6 ~ 35%)
산 출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 금) 할 세 액

◆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 ◆ 퇴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 신용·직불·기명식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기명의로 아닌 다른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로납부 영수증

- ◆ 가족의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 ◆ 병·의원외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 보험료 영수증

-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보장성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저소득 근로자가구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은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부양자녀수에 따라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0명(1,300만원), 1명(1,700만원), 2명(2,100만원), 3명 이상(2,500만원)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나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 전년도 6. 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전년도 6. 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이 합계액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5. 1. ~ 5. 31.
- 신청방법 :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서류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지금액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수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모집·방문판매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자녀 수, 배우자 유무	총 급여액 등	최대 지급액
부양자녀 0명, 배우자 유	1,300만원	연 70만원
부양자녀 1명	1,700만원 미만	연 140만원 이하
부양자녀 2명	2,100만원	연 170만원 이하
부양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	연 200만원

4

주택과 세금

01 주택의 취득과세금	60
02 주택의 양도와세금	62
03 주택의 임대와세금	64
04 1 세대 1 주택 비과세	66
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 주택자	68
06 1 세대 다주택 증과세 한시적 완화	70
07 종합부동산세 안내	72
*자료상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76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증부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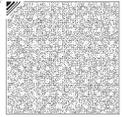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취득방법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²⁾	지방교육세	합계
매매 (분양포함)	일반	취득가액	4%	0.2%	0.4%	4.6%
	감면적용 ¹⁾					
	-국민주택 이하		2%	비과세	0.2%	2.2%
-국민주택 초과	2%		0.5%	0.2%	2.7%	
원시취득(자가건축)	2.8%		0.2%	0.16%	3.16%	
상속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 1)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2012년까지)
- 2)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84, 87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89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72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주민세) 소득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주택	과세표준의 6%~38%
1~2년 보유주택	과세표준의 40%
1년 미만 보유주택	과세표준의 50%
2주택자의 주택	과세표준의 6%~38% (2012.12.31.까지 양도분)
3주택 이상자의 주택	과세표준의 6%~38% 다만,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10% 가산[16%~48%] (2012.12.31.까지 양도분)
미등기 주택	과세표준의 70%

※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납부함

-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 다만, 2011. 6. 2. 이전에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6, 68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 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됩니다.
-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됩니다.

◎ 주택의 임대와 세금

◆ 부가가치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 수 계산

-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합니다.
- ◆ 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 다만,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 ◆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하여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 별로 판단합니다.

◎ 과세방법

◆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11년 귀속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 만큼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다만, 소형주택은 2013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선정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형주택: 전용 면적이 85m²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2011. 6. 2. 이전에 서울특별시, 과천시,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장기저당담보주택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때(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경우에 한 함)

◎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2008. 10. 7. 이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 2011.7.1.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됩니다.

-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

-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겸용주택의 비과세

- ◆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구 분	비과세 여부
주택 > 점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 ≤ 점포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 ◆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입니다.
-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 2014.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농어촌 주택

-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고향 주택

- 고향주택 :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 ◆ 2009. 1. 1. ~ 3. 15. 양도분 : 45%
- ◆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양도분 : 일반세율 6~38% 다만, 주택투기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지정됨)의 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 ◆ 4년간(2009. 1. 1. ~ 2012. 12. 31.)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6~38%가 적용됩니다.
- ※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을 적용하며 위의 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 2011년 말까지 증과대상 부동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2012. 1. 1.이후 양도하는 다주택 증과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타 증과세 사례

- ◆ 3주택 이상자가 상가와 주택의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는 주택부분만 증과세 되고, 상가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

3주택 이상 판정 시 보유주택의 수는 아래 지역기준이나 가격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 지역기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광역시 소재 주택
- ※ 제외지역 :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 가격기준

-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입주권의 경우 종전 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는 해당되나 종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 3주택 종과제외 소형주택(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건물 60㎡, 대지 120㎡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2003. 12. 31. 이전 취득한 주택
- ◆ 1세대 2주택 종과제외 소형주택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종과세 됩니다.
- ◆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과세하고,
- 2차로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기준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 구분		비과세 여부
주택 (1세대 1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주택공시가격 9억원)
종합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어떤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나요?

구 분	부 동 산	과세여부
건 물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
	오피스텔(주거용)	○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 등)	×
	공장건물, 별장(휴양·피서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	×
	일정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겸용 놀이방)	×
토 지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일부	×
기 타	분양권	×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 ◆ 매년 6. 1.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 ~ 12. 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먼저, 임대사업자등록(시청·군청·구청)과 사업자등록(세무서) 후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과세 제외됩니다.

◆ **세부담상한**

과세대상 유형별로 당해연도 총 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 세액상당액과 비교하여 일정한도(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면제됩니다.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6억 이하	0.5%	-	15억 이하	0.75%	-	200억 이하	0.5%	-
6억 ~12억	0.75%	150만원						
12억 ~ 50억	1%	450만원						
50억 ~ 94억	1.5%	2,950만원	15억 ~ 45억	1.5%	1,125만원	200억 ~400억	0.6%	2,000만원
94억 초과	2.0%	7,650만원	45억 초과	2.0%	3,375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 과세표준 = (유형별 공시가격 등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주택·토지 공시가격의 공시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해양부	시청·군청·구청
가격열람	시청·군청·구청 종합민원실		

※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상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 자료상 행위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발급받은 상대방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자료상 행위의 처벌규정

- 자료상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3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치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가능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원 이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와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자료상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 국세청에서는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부동산과 세금

01 부동산거래와관련되는 세금	78
0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80
03 자경농지와 세금	82
04 재산의 상속과 세금	84
05 재산의 증여와 세금	87
0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89
0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90
08 기업의 사전상속제도	92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종부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66pag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82pag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방법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²⁾	지방교육세	합계
매매 (분양포함)	일반	취득가액	4%	0.2%	0.4%	4.6%
	감면적용 ¹⁾ - 국민주택 이하 - 국민주택 초과		2% 2%	비과세 0.5%	0.2% 0.2%	2.2% 2.7%
	원시취득(자가신축)		2.8%	0.2%	0.16%	3.16%
	상속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 1)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2012년까지)
- 2)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87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율

양도가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취득가액	1,200만원 이하	6%	-
(-) 필요경비 등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양도차익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양도소득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1년 미만 보유자산	50%	
과세표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40%	
(×) 세율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6 ~ 38% (2012. 12. 31. 까지 양도분)	
산출세액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6 ~ 38% (2012. 12. 31. 까지 양도분)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10%가산 [16 ~ 48%]	
	비사업용 토지 등	6 ~ 38% (2012. 12. 31. 까지 양도분)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 10%가산 [16 ~ 48%]	
	미등기 양도자산	70%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자본적 지출액: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소개비) 등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외의 토지·건물 양도 시	
	2008.1.1. 이후	2008.3.21. 이후	2009.1.1. 이후	2007.12.31. 이전	2008.1.1. 이후
3년 이상 4년 미만	10%	12%	24%	10%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16%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20%	40%	15%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24%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28%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32%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36%	72%		27%
10년 이상 11년 미만	30%	40%	80%	30%	30%
11년 이상 12년 미만	33%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36%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39%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42%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45%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76%			
20년 이상		80%			

*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당시 1주택이면 적용. 다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일지라도 최고 30% 공제

-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되는 주택
-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원 초과 과세되는 주택
-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1주택자

◎ 양도소득기본공제

- ◆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자경농지의 양도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됨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함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2억원, 2008. 1. 1. 이후)
 -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2. 12. 31. 까지 양도한 경우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자경농지의 대토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농지)를 사야 하며
- 다른 농지를 먼저 샀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 1. 1. 이후)

◎자경농지의 증여

-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자 경 농 민 :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 농 자 녀 :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의 2)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자경농지의 교환

-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공과금·채무
(-)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기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상속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감정평가 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 상속공제

- ① 기초공제 : 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 ④ 일괄공제
 - 「①기초공제 + ③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임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⑦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음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료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05 재산의 증여와 세금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의 계산

-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증 여 재 산
(-) 증여재산공제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관 계	공제금액
배 우 자	6억원(2007. 12. 31 이전에는 3억원)
직계 존·비속(계부, 계모 포함)	3천만원(미성년자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 ◆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 하는 경우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 창업자금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90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

-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납부

-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 생략)
-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0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 - 공과금 상당액]
- 이자·배당·기타소득 :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공과금 상당액]
- 급여소득 : [총 급여 - 원천징수세액]
-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 ~ 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 ◆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다음 업종을 제외할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
 -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 ◆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창 업 자 금	▶ 창업자금 : 30억원 한도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원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율 : 10%
산 출 세 액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기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30억원 한도)을 2013년 말까지 자녀 1인이 증여받은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 기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 2011. 1. 1. 이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하인 기업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2010. 12. 31.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 수증자의 요건은?

◆ 수증자는 기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기업승계 증여세 계산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가업승계 주식가액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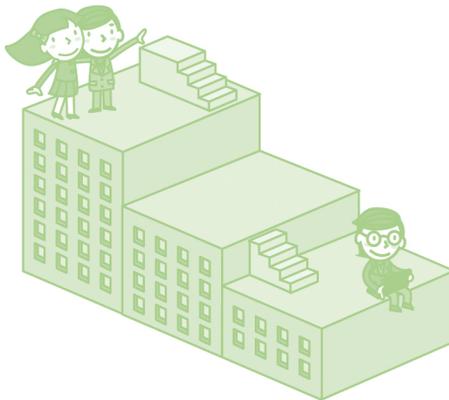
▶주식가액 : 30억원 한도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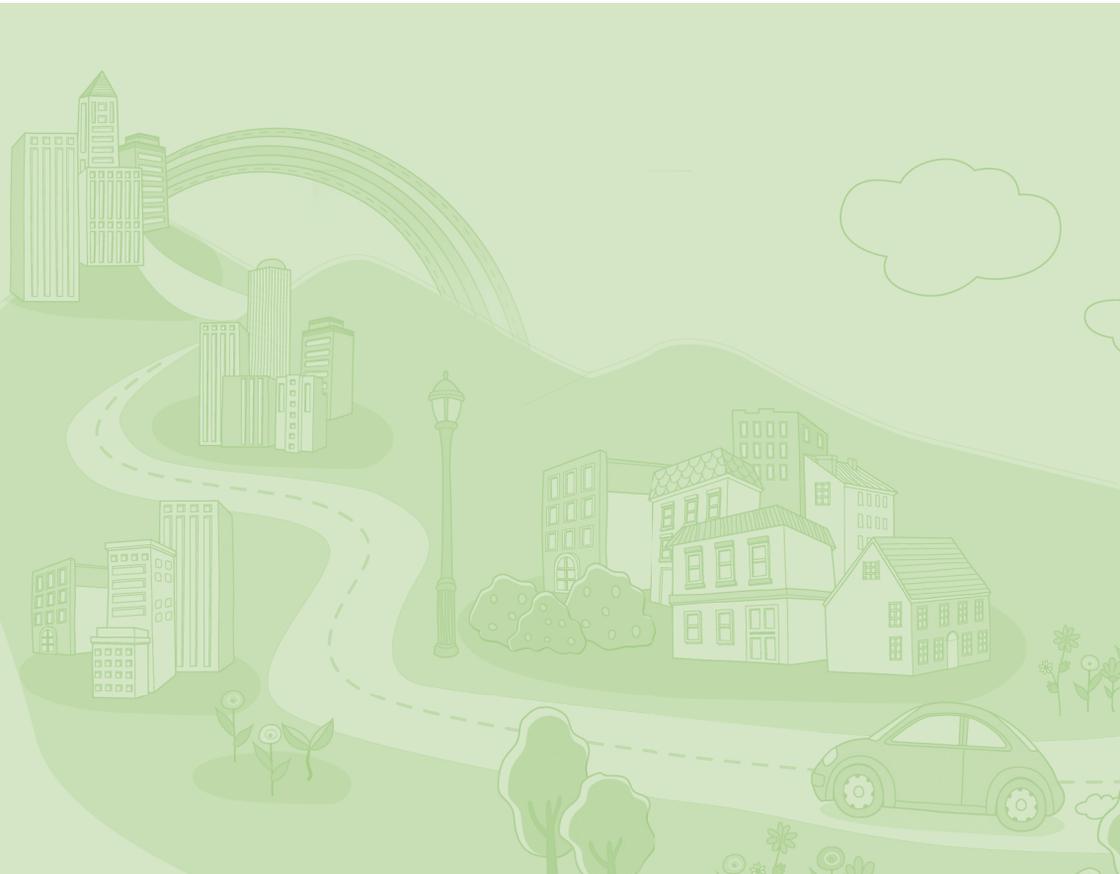
▶세율 : 10%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생활세금
시리즈





6

알기쉬운 세금정보

01 국세청고객만족센터	96
02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98
0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00
04 징수유예 · 납기연장안내	102
05 홈택스 이용안내	104
06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안내	106
0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107
08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08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란?

- ◆ 납세자 여러분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한 국세청의 전문 상담서비스 기관입니다.
- ◆ 전국 어디에서나 세무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상담관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설치 배경 및 서비스 개선

- ◆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위해 종전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 되어 있던 세무상담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이용안내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전화,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전화상담 (126번 세미래콜센터를 통해 연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세법상담)을 선택하면 상세하고 정확한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화요금은 시내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 ◆ 인터넷상담
 -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에서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활용하거나 「인터넷 질문하기」를 클릭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번지(역삼동 824번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방문상담실(1층)

◎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

- ◆ 국세청은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VOC 시스템 이용방법
 -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불만, 건의, 칭찬 등을 전화(국번없이 126)나 세무관서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VOC 처리결과 회신
 - 제기된 VOC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휴대폰 SMS와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처리결과 회신과 함께 E-mail 또는 전화로 신뢰성과 신속성에 대한 고객평가를 받습니다.
 - 제기되어 처리한 VOC는 더 나은 세정서비스 구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농특세를 면제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 · 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 · 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징수유예 혜택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제작물품
-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기업 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5% 세액공제
사업전환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7%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 7% (일반법인 10~14%)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접대비 인정한도(①+②) ①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수입금액 × 적용률
지원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 기증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지방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고용유지 · 증대 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 시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기술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한도)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간(2년)간 50% 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수입금액의 3% 한도) · 직전 4년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은 10%)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시설투자금액의 5~7%를 고용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내 감면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명세서 제출 시 1만원 ~ 300만원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원 ~ 1,000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 ~ 10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내 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4년간 50% 감면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4년간 50% 감면

※ 감면내용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라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납부기한 연장 사유

-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⑨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 이내

◆ 소규모 성실사업자

-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 다만, 1년간 3회 이상 체납, 500만원 이상 체납, 3년간 결손 500만원 이상 제외

◆ 징수유예 사유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의 효과

-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홈택스(Hometax)란?

- ◆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국세 종합 서비스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 www.hometax.go.kr

◎ 홈택스는 이렇게 편리합니다.

-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나 은행 등에 가지 않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증명수요처에 민원증명 등을 직접 출력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선택
- 가입용번호가 있는 경우
 - 각종 신고안내서 등에 기재된 개인별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 기 가입된 납세자는 가입용번호가 없으며, 비사업자에게는 가입용번호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가입용 번호는 신고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

◆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입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 주요 서비스 내용

◆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개인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총 16 종):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사업장현황신고서, 공익법인보고서, 종합부동산세, 해외금융계좌신고서, 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서

◆ 전자고지

-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고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음)
- 대상: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국세

◆ 세금납부

-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모든 국세(고지 및 자진 신고분 포함)

◆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등 홈택스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증명발급

- 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 신청하고 납세자의 PC에서 증명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총 12 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법인),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 ※ 모든 증명은 영문증명 발급가능 (단,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은 제외)

◆ 조회 서비스

- 납세자 본인의 신고내역과 납부내역 및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 세무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신고내역 5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지급명세서) 및 납부내역, 기타내역 15종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환급금조회,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세금포인트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등)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 혜택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등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그 초과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학원비 지로 납부금액

- 공제대상 금액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신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M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
국세청 126 세미라콜센터(국번없이 126)

◆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1.3%를 연간 500만원(단, 2012. 12. 31.까지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한다)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전화망을 사용)에 대하여 건별 20원의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전자화폐 ·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07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2010. 4. 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예시 : 거래금액 3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 현금결제 2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만원

◎ 적용대상 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 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료업종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수의업 등 * 다만, 의료보험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일반유희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희주점, 산후조리원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자진발급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거래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스마트폰 「<http://m.taxesave.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레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 전화 ARS(☎126-내선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 전송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2012. 7. 1.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7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01 납세자권리헌장	110
02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112
03 납세자보호담당관	113
0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114
05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116
06 세금포인트 제도	118
07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120
08 근로장려세제	122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제도란?

-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세금고충 수용 여부,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 제외)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 → 외부 민간인 위원 10명 : 내부 공무원 위원 8명
 - 세무서 → 외부 민간인 위원 8명 : 내부 공무원 위원 6명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

◎ 외부 민간위원은 세법 및 회계 분야 전문가

- ◆ 세금고충민원과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회계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외부위원들은 세무사, 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진 **고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말합니다.
- ◆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 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면없이 126 → 5)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여기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조정해드립니다.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제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09. 10. 26. 시행)

◎ 납세자권리침해 행위란?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세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중복 세무조사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5.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6.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7. 위 1~6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 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위 1~6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권리침해 유형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	세무조사중지
• 중복 세무조사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조사반(담당 교체)
•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징계요구
• 기타 침해행위	시정요구

-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와 중복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서 또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관이 공정하게 심의·판단합니다.

⇒ 세무조사중지권은 납세자보호관만 행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충민원 신청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심사·심판·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 불가)

◎ 행정소송

-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15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란?

- ◆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

- ◆ 개인납세자의 아래 세금 납부액을 대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며
 - 대상 세금 : 종합·근로·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복권당첨소득 등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소득과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 ◆ 납부세액은 20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 ◆ 세금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매년 누적관리합니다.

구 분	세 금 포 인 트
자진 납부세액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 납부세액	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

- ◆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합니다.

◎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 ◆ 누적포인트가 100 점 이상인 경우
 - 세법 상 납기연장,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
 적립된 포인트 ×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

◆ 누적포인트가 1,000 점 이상인 경우

- 주요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직접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 민원증명(6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

- 세무서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의 확인

◆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는

「개인」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 포인트조회」 코너에서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스마트폰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미가입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문의 (국번없이 126-5)

◎ 세정 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원을 한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3조)

◆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순환점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한함)

◆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 일정요건을 갖춘 고객·모범납세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 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
※ 30억원을 한도로 보증 (일부 일반기업에 대한 차감한도 15억원 적용배제)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 기술력, 수출비중, 산학협력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대구·전북·광주은행(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혜택)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표창을 수상한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

-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15%의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 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것
- 입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음

◆ 총 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부양자녀 수	0명(배우자 有)	1명	2명	3명 이상
총 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 주택 요건

- 전년도 6. 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 요건

- 전년도 6. 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등을 포함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i)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년도에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 ii)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과
- iii)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모집 및 방문판매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서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40분의 7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00분의 28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90분의 17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9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 신청기간: 5. 1.부터 5. 31.까지
- ◆ 신청자는 **휴대전화, ARS 전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등으로 **전자신청**을 하거나
 - ※ 휴대전화 신청은 무료로 신청가능하며, ARS 전화 신청은 저렴한 비용(3분당 유선 45원, 무선 350원 정도)으로 가능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근로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할 경우 제출 생략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자료 : 임차한 건물에 있거나 분양권 등 있을 경우 제출
 - ①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사본
-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8

탈세제보와 포상금제도

01 탈세제보 안내	126
0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127
0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28
04 신용카드 결제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129
0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130
06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131
07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32
08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133

국세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탈세제보란?

-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제보의 접수

- ◆ 인 터 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 전 화 : 국번없이 126 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 ◆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0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제보자가 탈세제보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조세범으로 처벌되어 벌금·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세제보에 의해 1억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된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 ◆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포탈 등 관련 정보
-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 자료
- ◆ 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액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포탈세액 등의 5~15%(1억원 한도)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의 2~5%(1억원 한도)

◎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 자료
- ◆ 제공한 정보가 부도·폐업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0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 ~ 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은닉재산 신고화면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고객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04 신용카드 결제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행위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 2. 2.거래분부터 5년 이내 신고)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거래, 신용카드 발급거부 · 월세」
- 모바일(스마트폰) M현금영수증서비스 「발급거부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

◎ 포상금 지급

- ◆ 결제 · 발급거부금액(5천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0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 발급의무업종 가맹점이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업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병원 등, 한의원, 수의업
- 학원 등,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 주점업 등, 산후조리원

◎ 신고방법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양식에 의해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2012. 2. 2.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 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M현금영수증서비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

◎ 포상금 지급

- ◆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06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 위장사업자

◎ 신고방법

-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 증거자료 예시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 「명의위장사업자」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청 신고분석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포상금 지급

- ◆ 포 상 금 : 신고건별로 1백만원 지급
- ◆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이체
- ◆ 지급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신고대상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신고방법

- ◆ 6하 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접수
-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제보」
- 지방청(세원분석국), 세무서(법인세과, 재산세과)

◎ 포상금 지급

- ◆ 포 상 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로 징수한 금액의 2 ~ 5% (한도 1억원)
- ◆ 지급시기 :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확정 후
- ◆ 지급방법 :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에 이체
- ◆ 지급제외 : 가명·제3자 명의로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한 경우와 과태료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 ◆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 신고방법

- ◆ 6하 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 우편번호 : 100-180
- 전화번호 : (02)2011-0777, 0774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참조

◎ 포상금 지급

-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 지급시기 :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 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2012 생활세금시리즈

인쇄일 | 2012년 4월 **발행일** | 2012년 4월

발행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

집필자 | 세정홍보과장 김창기 행정사무관 이정권 국세조사관 강은호
 국세조사관 정광준 국세조사관 윤희민 국세조사관 이지숙
 국세조사관 이주연 국세조사관 김일환 국세조사관 김영승
 국세조사관 김우영 국세조사관 최경원 국세조사관 김성민
 국세조사관 이성복 국세조사관 백성현 국세조사관 이용수
 국세조사관 김주석 국세조사관 손상영 국세조사관 유현인
 국세조사관 송종철 국세조사관 최재현 국세조사관 김진홍
 국세조사관 변유솔 국세조사관 박성호 국세조사관 박상별
 국세조사관 이계홍 국세조사관 이성호 국세조사관 추순호
 국세조사관 채수향 국세조사관 류동현

디자인·인쇄·구입문의 | (주)일진커뮤니케이션 (02)2277-4424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국세청 126 세리퀘 콜센터로
세리퀘 콜센터

문의하세요!

※ 국세청의 승인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정가 : 1,500 원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전자책자로 다운로드(무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개정될 세법령 등을 동 전자책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 세미래 稅美來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청의 공정세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값 1,500원



ISSN 2093-419X

2012년 4월 국세청 세정홍보과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는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 고객의 소리)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1번 선택 후 9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